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37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7.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낙시어선업법 개정으로 낙시어선업 신고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신설코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수산관계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에 낙시어선업 신고를 추가함  
(안 [별표1] 9. 수산관계 제10호 신설)

### 3. 관계법령

가. 낙시어선법 제4조 및 제21조의2

나. 낙시어선업 신고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(신설) 협조 공문

[지경53300-14200(2002.10.21)호]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【인가·허가·신고·등록등】란 제9호 수산관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1]

### 제 증 명 수 수 료

| 구<br>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<br>준 | 요<br>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b>【인가·허가·신고·등록 등】</b>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9. 수산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(1) 어업(내수면포함)면허 신청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3,000원 |
| (2) 어업(내수면포함)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       | 1건     | 3,000원 |
| (3) 어업권 이전, 분할, 변경허가 신청              | 1건     | 2,500원 |
| (4) 관리선 사용의 지정(승인) 신청                | 1건     | 2,500원 |
| (5) 연안어업(내수면포함) 허가 및<br>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| 1건     | 2,500원 |
| (6) 구획어업허가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3,000원 |
| (7) 연구(교습)어업 승인 신청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1,500원 |
| (8)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 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3,000원 |
| (9)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3,000원 |
| (10) 낚시어업선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| 2,500원 |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   |    | 개정안   |    |        |
|--|----|----|---|----|--------|
| [별표1]<br>제증명등 수수료  |    |    | [별표1]<br>제증명등 수수료   |    |        |
| 구분   | 기준 | 요액 | 구분  | 기준 | 요액     |
| <b>【인가,허가,신고,등록 등】</b><br>9. 수산관계<br>(1) ~ (9)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   |    | <b>【인가,허가,신고,등록 등】</b><br>9. 수산관계<br>(1) ~ (9) (생략)<br><u>(10) 낚시어선업 신고</u> | 1건 | 2,500원 |